호서신기술창업보육센터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명칭 및 소재지) 이 보육센터는 호서대학교 부설 호서신기술창업보육센터(이하 “보육센터”라 한다)라 칭하며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
제 2조 (설치목적) 보육센터는 창업 및 신기술 보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산·학·연·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독립된 제조업체로서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각종 행·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건실한 제조업체로의 육성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업) 보육센터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시설지원
   가. 시제품제작 공간 및 기계시설
   나. 시험분석 및 측정장비(공업기술원과 협의지원)
   다. 회의실, 전시실, 공동작업장 등 제공
   라. 기본 Utility 제공(전기, 수도 등)
2. 사무관리 지원
   가. 전화, FAX, 안내
   나. 워드프로세서, 복사기, 우편
   다. 기타 사무 및 행정지원
3. 지도 및 연수, 공동연구
   가. 경영 및 기술연구지도
   나. 시제품 제작 공동연구(연구비 지원)
   다. 대학연구소 네트워크 알선
   라. 창업자금 및 입지 알선
   마. 마케팅 지도 등
   바. 연구 및 개발
4. 대학내 시설의 공동사용 및 학생의 현장지원
5. 기타 보육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 4조 (연구실)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각종 연구실 등을 둘 수 있다.

제 2 장 조직 및 임원

제 5조 (임원) ① 보육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 1인을 둔다.
② 소장은 호서대 교수 또는 부교수인 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 명예소장 약간 명, 각 부서장은 호서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제 6조 (임원의 직무)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내의 연구, 인사, 경리, 기타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7조 (보육센터 요원) 보육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, 기술원 및 행정원을 둘 수 있다.

제 8조 (자문위원회) 보육센터의 주요정책 결정자문 및 사업성과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3 장 운 영 위 원 회

제 9 조 (운영위원회) 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,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약을 제정할 수 있으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인 이상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
1. 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및 지원방안
2. 예·결산의 심의
3. 보육센터 제규정 심의
4. 입주자 선정 및 졸업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4 장 재 정

제10조 (재원)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충청남도 지원금, 통상산업부 지원금, 대학 지원금, 관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 (예산 및 결산) 보육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2조 (운영규정 등) 보육센터 운영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운영규정과 관련법규,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